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(舊 개나리아파트)가 철거되어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업장”이란 구미시 관내에서 사업자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.
2. “근로자”란 사업장에서 월 단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.
3. “모자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가족
 -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족

제3조(명칭 및 위치)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(이하 “임대아파트”라 한다)의 명칭은 “개나리아파트”로 하며, 위치는 구미시 박정희로 491(송정동)에 둔다.

제4조(관장) 임대아파트는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장한다.

제5조(입주대상자)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 근

무하는 여성 근로자(이하 “근로자”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임대허가)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임대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임대허가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. 다만,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동반하여 입주할 수 있다.
2. 감염병 또는 정신질환자
3. 제8조 각 호에 따라 임대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제8조(임대허가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
2.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<개정 2007.7.1.>
3. 시설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
4.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는 등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
5.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. 다만,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 추천을 받은

자는 제외한다.

6. 임대료등을 2월이상 체납한 자

7.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

제9조(임대료등 납부 및 환불)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손해배상) 입주자가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탁관리) ①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아파트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 계시설관리, 수탁자책임,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매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2조(보조사업) 제11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이 운 균
	담 당	최 선 자
	담 당 자	성 명 지 (480-6213)